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상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7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서상열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문성호,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허 훈, 황철규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동일 영향권역 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사업규모를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두 사업 간 시간적 간격이 과도하게 긴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합산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평가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간 시간 간격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하고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일 영향권역 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간의 시간적 간격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두 사업의 사업규모를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1 비고 제4호 나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나. 사업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1)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또는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고, 사업 승인등으로부터 15년 이내에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르는 때. 다만, 사업규모의 합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이 기존 사업 승인등으로부터 15년 이내에 승인등이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다.

- 2)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

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1)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또는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고, 사업 승인등으로부터 15년 이내에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와의 합이 평가대상 규모에 이른 때. 다만, 사업규모의 합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이 기존 사업 승인등으로부터 15년 이내에 승인등이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다.

2)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

모가 해당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라. 이 조례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등을 받아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만, 위 표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 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의 비고 제4호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